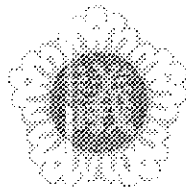


제225회 임시회
2004. 3. 29. (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3월 16일
- 회부일자 : 2004년 3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의 근거 법령 및 사무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【기업지원과】

- 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이 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법령을 정비함

【사회복지과】

- 장애인 체육대회,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“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무”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사업은 시·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에서 삭제함

【보건위생과】

- “나병”의 명칭이 “한센병”으로 변경되어
위탁대상 사무명을 정비함

5. 검토의견

○ **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**

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려는
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,

- **기업지원과** 소관의 산업단지관리권한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(2002.12.30,
법률제06842호)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,
- **사회복지과** 소관의 장애인재활에 관한 사무는 시장·군수가
직접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며,
- **보건위생과** 소관의 나병 명칭이 전염병예방법의 개정(2000.1.12,
법률 제06162호)으로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사무 명칭을
변경하려는 것으로서,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